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

-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

-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 지 응

목 차

제1장 서론	2
제1절 문제의식	2
제2절 연구주제 및 연구의의	3
제2장 학교-경찰 연계제도	5
제1절 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5
제2절 국내 학교-경찰 연계제도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3장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 연계활동 ...	12
제1절 연구방법과 대상	12
1. 연구방법	12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
제2절 분석결과	16
1.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연계활동	16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16
나. 학교폭력 상담활동	25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37
라. 학교주변 순찰활동	44
2.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역 전문상담기관 연계활동	54
가.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55
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연계 및 피연계	58

3. 학교전담경찰관의 연계활동 장애요인	63
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 과다	63
나. 상담 및 중재 활동 전문성의 한계	64
다.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 비활성화	66
라.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여건 미비	68

제4장 학교전담경찰관의 연계활동 개선대책 71

1.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충원	71
2. 배움터지킴이 공조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	72
3. 고위험군 학교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순환 상주 제도 도입	73
4.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 활성화	74
5. 학교전담경찰관 연계활동 업무 매뉴얼화	75
6. 상담 및 중재활동 관련 전문 교육과정 제공	76
7.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실현 및 수사업무 병행 지양	78

제5장 결론 80

〈표 차례〉

〈표 1〉 성별 분포	13
〈표 2〉 연령대별 분포	14
〈표 3〉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기간별 분포	14
〈표 4〉 지역별 분포	15
〈표 5〉 계급별 분포	16
〈표 6〉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학교급별 평균 담당학교 수	16
〈표 7〉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1인 평균 담당학교수 (단위: 개교, 명)	18
〈표 8〉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지난 3개월 평균 예방교육 횟수	18
〈표 9〉 지역별 3개월 평균 예방교육 횟수(단위: 회)	19
〈표 10〉 6개월전 대비 예방교육 요청횟수 비교 (단위: %)	20
〈표 11〉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단위: %)	21
〈표 12〉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단위:%)	21
〈표 13〉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단위: %)	21
〈표 14〉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 (단위:%)	22
〈표 15〉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단위:%)	23
〈표 16〉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단위:%)	23
〈표 17〉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의 어려움 (단위: %)	24
〈표 18〉 지난 1개월간 학교폭력 관련 상담횟수(단위: 회)	25
〈표 19〉 지역별 학교 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개월 평균 상담횟수	26
〈표 20〉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 내용	27
〈표 21〉 지난 6개월 전 대비 상담활동 요청횟수 변화(단위: %)	28
〈표 22〉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29
〈표 23〉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	29

<표 24>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29
<표 25>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	30
<표 26>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31
<표 27>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31
<표 28> 상담활동 자격증 취득 여부	32
<표 29> 상담활동 관련 취득 자격증 종류	33
<표 30> 취득 자격증 상담활동 도움 여부	33
<표 31> 향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의사	34
<표 32> 상담 관련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	34
<표 33>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상담 전문교육 필요성	35
<표 34>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의 어려움	35
<표 35> 연령대별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 선택 비율	36
<표 36> 학교전담경찰관 연령대별 1개월 동안 학폭위 참석회수	37
<표 37> 6개월전 비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횟수	38
<표 38>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39
<표 39>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	39
<표 4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39
<표 4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	41
<표 4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어려움	43
<표 45> 연령대별 '중재활동 노하우 부족' 선택 비율	44
<표 46> 학교주변 순찰활동 여부	45
<표 47> 지역별 학교주변 순찰활동 여부 비율	46
<표 48> 담당학교 전부 대상 순찰 활동 여부	47
<표 49> 일부 학교 순찰대상 제외 이유	47
<표 50> 순찰활동 시행, 순찰방법, 대상지역 선정시 학교와 협의 여부 ..	48
<표 51> 순찰 대상 학교수, 순찰횟수, 소요시간	48
<표 52> 학교주변 순찰장소	49

<표 53> 6개월전 대비 학교로부터 순찰활동 요청 빈도 비교	50
<표 54>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51
<표 55>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	51
<표 56>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51
<표 57>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학교장 반응	52
<표 58>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53
<표 59>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53
<표 60> 학교주변 순찰활동의 어려움	54
<표 61> 전문 청소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여부	55
<표 62>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기간별 전문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	56
<표 63>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참여 대상 기관	56
<표 64> 학교폭력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참여시 활동내용	57
<표 65> 청소년 상담기관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 연계 요청 여부	58
<표 66>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기간별 가·피해학생 연계 요청 경험	58
<표 67> 청소년 상담기관 연계 요청시 지원 기대사항	59
<표 68> 청소년 상담기관으로부터 피연계 요청 여부	59
<표 69> 청소년상담기관으로 피연계시 요청받은 지원활동	60
<표 70>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활동 어려움	61
<표 71> 근무지역별 지역내 연계기관 부재 선택 비율	62
<표 72>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여부 (단위: %)	68
<표 73> 학교폭력 업무 외 병행 업무	69
<표 74>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의견	69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근래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문제이다. 한창 꿈을 키우면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으로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식과 더불어 학교안전도 의식이 높아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폭력 실태를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쉽게 근절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가정과 교육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종합적인 학제간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도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더 이상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와 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학교-경찰 연계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경찰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한 연계 협력관계는 학교와 경찰의 협력관계를 넘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부모 등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한다.¹⁾ 학교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부모 등 관련 주체들의 연계하여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실태 분석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응한 학교와 경찰, 지역 전문상담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상의 장애요인과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주제 및 연구의의

이 연구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경찰과 학교의 연계 협력활동은 원활하

1) 미국에서 학교경찰관(SROs)은 학교와 경찰 사이에서 법 집행자, 상담자, 범죄예방교육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연락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Girouard, C., *School resource officer training program(FS 20010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 p.1).

게 이뤄지고 있는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내 활동은 학교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는가?

둘째,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학교 및 지역 전문상담기관과 연계 및 협력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는가? 그러한 장애요인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연계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이 연구는 전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5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연계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과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의 주체인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연계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그 장애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안한 연구로서, 국내에 도입된 지 2년을 맞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 경찰과 학교의 연계 협력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제2장 학교-경찰 연계제도

제1절 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학교-경찰 연계제도(Police-School Liaison Program)은 경찰이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법 집행 활동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와 경찰이 서로 연계하는 제도는 적어도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이 학교에 파견되거나 상주하면서 법 집행 활동을 벌이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다. Burke(2001)와 Girouard(2001)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경찰관 제도인 SRO(School Resource Officers) 프로그램은 1950년대 미시간주 Flint에서 시작된 것이지만,²⁾ 그 이전에도 SRO는 아니더라도 학교와 연계하여 법 집행 활동을 벌이는 경찰관들이 있었다.³⁾

학교-경찰 연계 제도는 일찍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오던 것인데, 이들 국가들이 학교-경찰 연계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도 애초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2) Briers(2003)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학교경찰관제도(SROs)는 1951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는 1958년에 도입되었다(Briers, A.N.,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2003, 5,2, 129-142).

3) 그 예로서 인디애나폴리스 공립 학교경찰의 역사는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교는 학교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 조사관”을 10년 이상 고용하고 있었다. 또한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국(Los Angeles School Police Department)은 1948년 경비부서(security section)로서 시작했다가 독립적인 경찰기관으로 변신한 것이다.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사후적인 처벌과 순찰활동이 중심을 이뤘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기에 이른다. 물론 경찰이 학교 안에서 범 죄행위를 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학교 안에서의 범 죄행위에 대응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기본 철학은 학교 안에서의 모든 위법행위는 학교행정책임자와 교사, 그리고 경찰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더욱 잘 통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 학교 내에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잇따르다가 급기야 1990년대에는 학교내에서 몇 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한다. 미국 사회는 학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무관용 원칙의 시행, 학교내 비디오카메라 설치, 금속탐지기 설치 등과 더불어 학교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등장한다. 특히 학교 경찰관 제도가 효과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 제도는 미국사회 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학교폭력에 대응한 대표적인 대책으로서 자리잡고 있다.⁴⁾

미국에서 운영되어 온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가장 일반화된 형태는 공립학교에 School Resource Officers (SROs)라고 하는 학교경찰관을 배치한 것이다. 미국의 학교경찰관을 School Resource Officers라고 부르는 까닭은 학교경찰관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도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주고⁵⁾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4) Brown, Be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5)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5면.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을 일반적으로 School Liaison Officers(SLO)라고 칭한다. 군대에 연락장교(liaison officer)가 있는 것과 유사한 의미에서 학교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경찰관에게 부여된 역할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학교경찰관(SROs)의 실제적인 임무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은 법 집행자, 상담자, 교사의 역할이다.⁶⁾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이 하는 일은 학교 내부 시설 순찰, 학교 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조사, 학생들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정보 수집, 학생 상담, 마약과 범죄예방 교육 등이다.⁷⁾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순찰이나 감독 업무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영국의 학교연계경찰관은 예방활동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학교연계경찰 제도 운영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 청소년과 경찰 사이의 접촉과 협력의 확대,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⁸⁾

-
- 6)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Monahan Torin, Torres R.D.(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p.23.
- 7) Girouard(2001)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은 법 집행관, 상담가, 교사의 역할 외에도 경찰기관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연락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학교경찰관(SROs) 협의체인 NASRO에서 규정한 학교경찰관의 직무 내용에는 학교 순찰, 등하교 시간 교통감독, 문제 학생 통제 지원, 학부모와 전문가 모임 참석, 지역경찰관을 위한 정보 수집, 일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지역 경찰과 학부모, 학생, 학교 사이에서 연락관 역할 등이다.
- 8) 영국의 많은 경찰들은 학교연계경찰(SLOs; School Liaison Officers)으로 불리는 경찰관을 두고 있다. 예컨대 Bedfordshire 경찰은 학교연계경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2004년),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과 경찰간의 접촉과 협력, 의사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Avon and Somerset 경찰(2002년)도 학교연계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역의 안전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범죄를 줄이려는 것이다(Brown, Be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제2절 국내 학교-경찰 연계제도

국내에서 학교-경찰 연계제도, 곧 학교경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것은 지난 2012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경찰관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다. 학교담당경찰관 제도와 스쿨폴리스 제도가 그것이다.

학교담당경찰관제도는 지난 1995년을 즈음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때,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경찰청의 대책인데,⁹⁾ 각 경찰서별로 수사 형사들이 최소 1개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담당하면서, 해당 학교 내의 폭력행위에 대한 단속과 학생들의 비행예방 활동을 맡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담당경찰관은 주기적으로 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주임교사 및 학교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폭력서클의 존재 여부와 불량학생 동향을 파악하며, 학교폭력 사례 수집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색출 활동을 벌이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일부 역할은 지난 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과 형사들의 학교내 폭력행위와 관련된 정보 취득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소극적인 형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로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일시적으로 스쿨폴리스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

9) 1995년을 즈음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제」 운영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처해 왔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그해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산 시내 7개 학교(초등학교 1곳, 중·고등학교 각각 3곳)에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관들을 2인 1조로 7개조를 편성하여 스쿨폴리스를 시범 운영한 것이다. 당시 스쿨폴리스에게 부여된 역할은 교내 순찰, 상담, 범죄예방 강의, 등하교 지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을 통해 학생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당시 스쿨폴리스 제도는 전직 경찰과 전직 교원을 2인 1조로 학교에 상주시켜서 교내 폭력 예방 활동을 벌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형태였지만, 전직 경찰관과 교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된 것으로서 학교-경찰 연계제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¹⁰⁾

국내에서 학교-경찰 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1월 학교폭력과 관련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피해사례 접수,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관리 등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¹¹⁾ 그해 6월에는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할 것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가·피해 학생 지원 등 학교폭력 업무에 전종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상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교육, 상담, 중재활동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은 비로소 본격적

10)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스쿨폴리스제도는 학교 폭력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각종 조사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그 명칭도 ‘배움터 지킴이’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배움터 지킴이 요원과 대상학교가 선정되었고, 그해 11월부터 12월에는 전국 71개 학교에서 142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했다. 2006년 초까지 배움터 지킴이는 경찰청 주관으로 시범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4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 10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08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해 왔으며, 2007년 3월부터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활동 중이다.

11) 경찰청, 보도자료, 2012.1.

인 학교-경찰 연계제도가 도입된 것을 보여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학교-경찰 연계 제도로서 학교경찰관(School Police) 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1990년대 후반에 박세정(1998)의 연구가 이뤄진 바 있고, 최근에는 최종술의 연구(2012)와 유지웅의 연구(2013)가 이뤄졌다.¹²⁾ 박세정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에 이뤄진 최종술의 연구는 박세정의 연구의 기초 위에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학교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과 한국적 학교경찰 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유지웅의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최근 미국사회 전반의 학교경찰관 제도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미국사회 전반의 학교경찰관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외에도 주목할 만한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실태조사가 있는데,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이다.¹³⁾ 이 조사는 서울시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상담활동, 순찰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참석 활

12)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유지웅,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방향”, 4대 사회악 연구자료집 2, 치안정책연구소, 2013.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3. 5.29;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3.9.2.

동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4개의 간단한 문항으로 조사한 것이다. 1차 조사는 지난 2013년 5월 중에 조사대상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조사결과 학교 교사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70.7%), 상담활동(63.7%), 순찰활동(69.0%), 학폭위 참석(85.5%) 활동에 대해서 평균 70%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차 조사는 지난 2013년 8월 중에 조사대상자 4,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82.7%), 상담활동(76.3%), 순찰활동(93.3%), 학폭위 참석(86.8%) 활동에 대해서 평균 80%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¹⁴⁾

이 조사는 비록 4개의 문항으로 된 간단한 설문조사이지만, 학교-경찰 연계 시스템 상에서 학교 내 주체들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이 학교 내 주체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반면, 이 연구는 학교-경찰 연계시스템 상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찰 연계 실태를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14) 각 활동별 퍼센트 수치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산출한 것임.

제3장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 연계활동

제1절 연구방법과 대상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전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교-경찰 연계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 연구는 학교와 경찰간의 연계활동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상의 장애요인과 그 개선대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어서 학교전담경찰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에 대한 학교내 주체들의 반응에 관한 설문조사는 올해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전담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를 통해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일괄 발송하였다. 2013년 7월 현재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은 모두 681명이나, 조사 기간 중 공무나 휴가로 조사에 응할 수 없었던 경찰관을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540여명

가운데 부실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52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지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별로 일괄 수합하여 회수하였으며 각 지방청별로 설문에 응한 경찰관들은 각 지방청별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 성별 분포

	빈도	퍼센트
남자	419	80.0
여자	105	20.0
합계	524	100.0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80%를 차지하고 여성이 20%를 차지한다. 2013년 3월 말 기준 전체 102,738명의 경찰 가운데 여경 인원이 7,815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전담경찰관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학교경찰관 업무가 상대적으로 여성 경찰관의 비중이 높은 여성·청소년계 담당 업무인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연령대별 분포

	빈도	퍼센트
20대	40	7.6
30대	247	47.2
40대	212	40.5
50대	24	4.6
합계	523	100.0

조사대상자는 연령대별로 30대가 47.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40대가 40.5%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수사형사의 평균연령이 40.6세인 것과 비교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업무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기간별 분포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6개월 미만	174	33.3	33.3
6개월~1년	160	30.7	64.0
1년~2년	160	30.7	94.6
2년 이상	28	5.4	100.0
합계	522	100.0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기간별 분포를 보면, 6개월 미만 활동경력자가 33.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6개월~1년, 1년~2년 사이 경력자가 각각 30.7%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기간이 대체로 짧은 것은 2012년에 이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년 이상 활동 경력자가 28명으로서 5.4%를 차지하는데, 그 절반 정도는 서울(5명)과 경기지역(8명)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 해 학교전담경찰

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어서 2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표 4> 지역별 분포

	빈도	퍼센트
서울	92	17.4
부산	31	5.9
대구	19	3.6
인천	24	4.5
광주	21	4.0
대전	12	2.3
울산	6	1.1
경기	118	22.3
강원	21	4.0
충북	17	3.2
충남	21	4.0
전북	44	8.3
전남	19	3.6
경북	54	10.2
경남	24	4.5
제주	5	0.9
합계	528	100.0

조사대상자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22.3%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 17.4%, 경북 10.2%, 전북 8.3% 순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서 전체 학교전담경찰관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계급은 경사 44.8%, 경장 23.7%, 순경 18.5%, 경위

12.8%, 경감 0.2% 순이다.

<표 5> 계급별 분포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순경	97	18.5	18.5
경장	124	23.7	42.2
경사	235	44.8	87.0
경위	67	12.8	99.8
경감	1	0.2	100.0
합계	524	100.0	

제2절 분석결과

1.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연계활동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표 6>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학교급별 평균 담당학교 수(단위: 명, 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9.26	5.09	3.69	18.04

조사대상자가 맡고 있는 학교급별 학교수를 조사한 결과,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초등학교 9.26개교, 중학교 5.09개교, 고등학교 3.69개교를 맡고 있어서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평균 18

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성별, 연령대별, 근무경력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활동지역별로는 다소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담당하는 학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서, 평균 6.82개교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 13.4개교, 부산 14.9개교, 울산 15개교 순이다. 반면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으로서 평균 37.3개교, 경남 31.6개교, 충남 30.9개교, 강원 26.5개교 순이다. 평균 담당학교수가 가장 많은 충북지역에서는 가장 적은 서울지역에 비해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5.5배나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 평균 담당학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서울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용하면서 1인당 담당학교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상대적으로 1인당 담당학교수가 적은 지역과 충북, 경남, 충남, 강원 등 상대적으로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그룹들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충원에 따른 효과, 즉 1인당 담당학교수의 감소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7>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1인 평균
담당학교수 (단위: 개교, 명)

근무지역	평균	사례 수
서울	6.82	90
제주	13.40	5
부산	14.90	30
울산	15.00	6
경기	15.92	116
광주	16.10	21
대전	16.25	12
경북	17.57	53
전북	18.07	44
인천	23.26	23
대구	24.94	16
전남	25.47	19
강원	26.57	21
충남	30.95	21
경남	31.63	24
충북	37.29	17
전 지역	18.04	518

<표 8>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지난 3개월 평균 예방교육 횟수
(단위: 회)

	사례 수	평균
예방교육 횟수	528	33.9

〈표 9〉 지역별 3개월 평균 예방교육 횟수(단위: 회)

지역	평균	사례 수
서울	15.96	90
대전	19.25	12
경북	23.13	53
전남	26.47	19
대구	27.58	19
부산	29.57	30
인천	31.13	23
전북	33.30	44
경남	33.63	24
강원	35.19	21
제주	36.80	5
경기	37.22	116
충남	40.05	21
울산	50.00	6
충북	56.35	17
광주	122.90	21
전 지역	34.00	521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3개월 평균 예방교육 횟수는 33.9회로서, 한달 평균 11.3회의 예방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 예방교육 횟수 순위는 지역별 담당학교수 순위와 비슷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담당학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인당 예방교육 횟수는 1인당 담당학교수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6개월전 대비 예방교육 요청횟수 비교 (단위: %)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 증가했다	125	24.5	24.5
조금 증가했다	197	38.6	63.0
비슷하다	124	24.3	87.3
다소 감소했다	54	10.6	97.8
크게 감소했다	11	2.2	100.0
합계	511	100.0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효과는 학교측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요청 횟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한 범죄예방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 요청횟수의 증감 추이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크게 증가했다’와 ‘조금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24.5%, 38.6%를 차지한 반면, ‘다소 감소했다’, ‘크게 감소했다’는 응답은 각각 10.6%, 2.2%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학교전담경찰관 대다수(63.0%)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이 학교측으로부터의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11〉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단위: %)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209	42.1	42.1
대체로 긍정적이다	245	49.3	91.3
그저 그렇다	39	7.8	99.2
다소 부정적이다	4	.8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497	100.0	

〈표 12〉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단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58	31.8	32.0
대체로 긍정적이다	277	55.7	87.7
그저 그렇다	57	11.5	99.2
다소 부정적이다	5	1.0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497	100.0	

〈표 13〉 예방교육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단위: %)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20	24.3	24.5
대체로 긍정적이다	267	54.2	78.7
그저 그렇다	98	19.9	98.4
다소 부정적이다	8	1.6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493	100.0	

〈표 11-13〉은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대다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42.1%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49.3%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31.8%, 55.7%를 나타내고,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24.3%, 54.2%를 나타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과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91.3%, 중학교 87.7%, 고등학교 78.7%에 이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반응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14>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 (단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70	32.5	32.5
대체로 긍정적이다	285	54.5	87.0
그저 그렇다	61	11.7	98.7
다소 부정적이다	6	1.1	99.8
아주 부정적이다	1	.2	100.0
합계	523	100.0	

〈표 15〉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단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31	25.2	25.2
대체로 긍정적이다	286	55.0	80.2
그저 그렇다	96	18.5	98.7
다소 부정적이다	7	1.3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20	100.0	

〈표 16〉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단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09	21.0	21.0
대체로 긍정적이다	277	53.3	74.2
그저 그렇다	125	24.0	98.3
다소 부정적이다	9	1.7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20	100.0	

〈표 14-16〉은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대 다수는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2.5%,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4.5%를 차지해 이 두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87.0%에 이른다. 일반교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25.2%, 55.0%로서 이 두 응답이 80.0%를 차지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각각 21.0%, 53.3%로서, 이 두 응답이 74.2%를 차지한다. 반면에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교 주체별 반응은 학교장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반교사, 학생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17>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의 어려움 (단위: %)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26	20.7	25.7
학생들의 낮은 호응	127	20.9	25.9
담당 업무의 과다	245	40.2	50.0
학교측의 비협조	111	18.2	22.7
합계	609	100.0	124.3

<표 17>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조사한 것인데, 해당 항목을 다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설문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을 하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25% 정도이다. 나머지 75%에 속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업무의 과다이다. 학생들의 호응이 낮다거나 학교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경찰관 담당 업무가 많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학교 내부적 요인이

나 학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요인이라기보다는 경찰관 업무 자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학교폭력 상담활동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도보호활동의 일환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상담활동은 주로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선도프로그램이나 지역 교육청 산하의 Wee 센터, CYS-Net 상의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활동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개월 동안 학교 안팎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개월 평균 학교 안에서 15.8회, 학교 밖에서 8.3회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평균적으로 하루 1회 정도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표 18> 지난 1개월간 학교폭력 관련 상담횟수(단위: 회)

	빈도	평균
학교 내	521	15.8
학교 밖	481	8.3

<표 19> 지역별 학교 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개월 평균 상담횟수

지역	평균 상담횟수	사례 수
충남	8.29	21
경북	10.04	53
강원	10.62	21
전남	10.74	19
경남	11.33	24
인천	11.52	23
충북	12.94	17
서울	13.83	90
부산	14.33	30
대전	17.50	12
대구	18.11	19
경기	18.18	116
제주	19.60	5
전북	20.84	44
울산	35.50	6
광주	36.38	21
합계	15.78	521

<표 19>는 지역별로 학교 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개월 평균 상담 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1개월 평균 학교 내 상담횟수는 적게는 8.3회, 많게는 36.4회에 이르는데, 지역별 평균 상담횟수의 순위는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 순위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담당학교수가 적었던 지역들로서, 경기, 울산, 제주 지역에서는 1인당 평균 상담활동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지역별로 1인당 평균 담당학교수가 많았던 지역군에 속하는 충남, 충북, 강원, 경남 지역은 지역별 평균 상담횟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담활동 빈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1인당 담당학교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이 더욱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그에 따른 1인당 평균 담당학교수의 감소는 1인당 평균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의 증가 등 학교폭력 관련 활동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20>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 내용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	272	31.1	52.8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상담	425	48.6	82.5
진로 상담	115	13.2	22.3
심리 상담	62	7.1	12.0
합계	874	100.0	169.7

<표 20>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서 어떠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중 응답한 조사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행하는 상담활동은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 상담 활동 영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벌이는 상담활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사대상자의 12%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을 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중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담경찰관도 있어서 사례에 따라 심리상담이 이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 상담이나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 상담, 멘토-피멘토의 관계에서의 진로상담과 달리, 심리상담은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전문 상담영역으로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상담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21> 지난 6개월 전 대비 상담활동 요청횟수 변화(단위: %)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 증가했다	91	17.8	17.8
조금 증가했다	222	43.4	61.3
비슷하다	140	27.4	88.6
다소 감소했다	52	10.2	98.8
크게 감소했다	6	1.2	100.0
합계	511	100.0	

<표 21>은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학교로부터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 요청빈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43.4%가 ‘조금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해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61.3%를 차지한 반면, 다소 혹은 크게 감소했다는 응답은 11.4%를 차지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수는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학교로부터 상담활동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학교로부터의 활발한 상담활동 요청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이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2>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36	27.6	27.6
대체로 긍정적이다	270	54.8	82.4
그저 그렇다	72	14.6	97.0
다소 부정적이다	14	2.8	99.8
아주 부정적이다	1	.2	100.0
합계	493	100.0	

<표 23>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37	27.1	27.1
대체로 긍정적이다	290	57.4	85.5
그저 그렇다	65	12.9	97.4
다소 부정적이다	11	2.2	99.6
아주 부정적이다	2	.4	100.0
합계	505	100.0	

<표 24>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13	22.7	22.7
대체로 긍정적이다	290	58.2	81.9
그저 그렇다	82	16.5	97.4
다소 부정적이다	13	2.6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498	100.0	

<표 22-24>는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대다수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27.6%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54.8%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27.1%, 57.4%를 나타내고,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22.7%, 58.2%를 나타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과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82.7%, 중학교 85.5%, 고등학교 81.9%에 이른다. 학교급별 반응을 비교해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중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반응과 달리 중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실제 학교폭력 관련 사례가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있는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이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22	23.4	23.4
대체로 긍정적이다	318	61.0	84.5
그저 그렇다	68	13.1	97.5
다소 부정적이다	12	2.3	99.8
아주 부정적이다	1	.2	100.0
합계	521	100.0	

<표 26>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22	23.6	23.6
대체로 긍정적이다	298	57.5	81.1
그저 그렇다	82	15.8	96.9
다소 부정적이다	15	2.9	99.8
아주 부정적이다	1	.2	100.0
합계	518	100.0	

<표 27> 학교전담경찰관 상담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09	21.1	21.1
대체로 긍정적이다	314	60.9	82.0
그저 그렇다	89	17.2	99.2
다소 부정적이다	4	.8	100.0
아주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16	100.0	

<표 25-27>은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에 대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대 다수는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23.4%,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1.0%를 차지해 이 두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84.5%에 이른다. 일반 교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23.6%, 57.5%로서 이 두 응답이 81.1%를 차지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각각 21.1%, 60.9%로서, 이 두 응답이 82.0%를 차지한다. 반면에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교 주체별 반응은 학교장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학생, 일반교사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반응이 일반교사들보다 더욱 긍정적이데, 이러한 반응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 학교폭력 상담활동은 예방교육 활동과는 달리 학생들과의 일대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데, 그 직접적인 당사자로부터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활동보다도 더욱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활동이 실제로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28> 상담활동 자격증 취득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렇다	396	75.3
아니다	130	24.7
합계	526	100.0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있어서 상담활동은 일반적인 경찰활동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비전문적 영역에 속한다. 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학과 출신자,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상담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조사대상자의 75.3%가 상담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표 29> 상담활동 관련 취득 자격증 종류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폭력 상담사	374	80.8	94.2
청소년 상담사	57	12.3	14.4
심리상담사	32	6.9	8.1
합계	463	100.0	116.6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취득 자격증 종류를 다중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94.2%가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14.4%,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8.1%로 나타났다.

<표 30> 취득 자격증 상담활동 도움 여부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 도움이 되었다	72	18.0	18.0
다소 도움이 되었다	219	54.9	72.9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91	22.8	95.7
모르겠다	17	4.3	100.0
합계	399	100.0	

<표 30>은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학교폭력 상담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응답자 가운데 18%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54.9%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지만, 한편으로 22.8%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소극적 긍정을 보이고 있고, 23%에 해당하는 응

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전담경찰관이 보유한 자격증이 학교폭력 상담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77.4%가 향후 새로운 자격증 취득 의사를 보이고 있다.

<표 31> 향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의사

	빈도	퍼센트
그렇다	282	77.4
아니다	82	22.6
합계	364	100.0

<표 32> 상담 관련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폭력 상담사	50	12.9	15.2
청소년 상담사	122	31.4	37.0
심리 상담사	217	55.8	65.8
합계	389	100.0	117.9

<표 32>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향후 취득하기 원하는 자격증 종류를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취득하기 원하는 자격증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이고 그 다음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하는 응답자는 조사대상자의 65.8%에 이른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상담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의 거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이 학교폭력 상담활동을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심리상담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과 같은 더욱 전문적인 자격증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있어서 학교폭력 상담활동은 다른 임무와 비교해서 비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업무 수행상의 부담감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상담 전문교육 필요성

	빈도	퍼센트
그렇다	481	92.1
아니다	41	7.9
합계	522	100.0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활동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상담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도 확인된다. <표 33>은 상담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결과인데, 조사대상자의 거의 대다수인 92.1%가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전문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표 34>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의 어려움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68	9.6	13.3
학생들의 낮은 호응	82	11.6	16.1
담당업무의 과다	226	32.0	44.3
상담관련 노하우 부족	232	32.9	44.9
학교측의 비협조	98	13.9	19.2
합계	706	100.0	138.4

<표 34>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이 설문 역시 학교전담경

찰관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자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하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25%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상담활동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담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과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업무의 과다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각각 44.9%, 44.3%가 이 두 항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반면에 학생들의 호응이 낮다거나 학교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6.1%, 19.2% 수준이다.

<표 35> 연령대별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 선택 비율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선택 빈도	25	105	90	8	229
연령대 중 %	62.5	43.6	43.9	34.8	44.9
비선택 빈도	15	136	115	15	281
연령대 중 %	37.5	56.4	56.1	65.2	55.1
전체 빈도	40	241	205	23	510
연령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5>는 학교전담경찰관 연령대별로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을 상담활동의 어려움으로 선택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연령대별로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을 선택한 비율은 20대 학교전담경찰관이 62.5%, 30대가 43.6%, 40대가 43.9%, 50대가 34.8% 순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상담 활동과 관련한 노하우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어려움에 관한 설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상담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성격은 학교 내부적 요인이나 학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요인이라기보다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업무량, 상담업무의 전문성 등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학교전담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횟수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1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횟수는 7회 정도이다.

<표 36> 학교전담경찰관 연령대별 1개월 동안 학폭위 참석횟수

연령대	평균	사례 수
20대	5.53	40
30대	7.05	246
40대	7.04	211
50대	9.83	24
합계	7.05	521

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2항에서는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6>은 학교전담경찰관 연령대별로 1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평균 참석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20대 학교전담경찰관과 비교해서 50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폭위 참석 중재활동이 활발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폭위 참석은 해당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권한 역시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볼 때, 50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폭위 참석 중재활동이 활발한 것은 해당 지역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젊은 학교전담경찰관보다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선호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7> 6개월전 비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횟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 증가했다	113	22.0	22.0
조금 증가했다	183	35.7	57.7
비슷하다	148	28.8	86.5
다소 감소했다	57	11.1	97.7
크게 감소했다	12	2.3	100.0
합계	513	100.0	

<표 37>은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학교로부터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빈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35.7%가 ‘조금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해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57.7%를 차지한 반면, 다소 혹은 크게 감소했다는 응답은 13.4%를 차지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수는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학교로부터의 실제 학폭위 참석 요청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이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8>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208	42.7	42.7
대체로 긍정적이다	228	46.8	89.5
그저 그렇다	47	9.6	99.2
다소 부정적이다	4	.8	100.0
매우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487	100.0	

<표 39>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218	43.4	43.4
대체로 긍정적이다	243	48.4	91.8
그저 그렇다	39	7.8	99.6
다소 부정적이다	2	.4	100.0
매우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02	100.0	

<표 4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93	39.3	39.3
대체로 긍정적이다	252	51.3	90.6
그저 그렇다	42	8.6	99.2
다소 부정적이다	4	.8	100.0
매우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491	100.0	

<표 38-40>은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대다수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42.7%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46.8%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43.4%, 48.4%를 나타내고,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39.3%, 51.3%를 나타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과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89.5%, 중학교 91.8%, 고등학교 90.6%에 이른다. 학교급별 반응을 비교해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중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에 대한 인식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상담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서 볼 때, 훨씬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이나 상담활동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의 20-30% 정도가 각 학교급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40% 정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이 실재를 반영한 것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은 특별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영역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209	40.7	40.7
대체로 긍정적이다	271	52.7	93.4
그저 그렇다	32	6.2	99.6
다소 부정적이다	2	.4	100.0
매우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14	100.0	

<표 4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206	40.2	40.2
대체로 긍정적이다	266	52.0	92.2
그저 그렇다	37	7.2	99.4
다소 부정적이다	3	.6	100.0
매우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12	100.0	

<표 43>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60	31.7	31.7
대체로 긍정적이다	288	57.1	88.9
그저 그렇다	53	10.5	99.4
다소 부정적이다	3	.6	100.0
매우 부정적이다	0	0	100.0
합계	504	100.0	

<표 41-43>은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에 대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학교장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40.7%,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2.7%를 나타내고 있어서 모두 93.4%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반교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42.0%, 52.0%로서 이 두 응답이 92.2%를 차지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각각 31.1%, 57.1%로서, 이 두 응답이 88.9%를 차지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교 주체별 반응은 학교장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반교사, 학생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과 비교해 보면, 학생들보다 학교장이나 일반교사의 반응이 더욱 긍정적인데, 이러한 반응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도 학교측과 매우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이 주로 학교장과 일반교사와의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이 학교장 및 일반교사와의 협력적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4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어려움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33	22.3	27.6
학부모의 비협조	95	15.9	19.7
담당업무의 과다	174	29.2	36.1
중재관련 노하우의 부족	141	23.7	28.3
학교측의 비협조	53	8.9	11.0
합계	596	100.0	123.7

〈표 44〉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을 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27.6%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25%)과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업무의 과다’와 ‘중재관련 노하우의 부족’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각각 36.1%, 28.3%가 이 두 항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반면에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라거나 학교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9.7%, 11.0% 수준이다.

〈표 45〉 연령대별 '중재활동 노하우 부족' 선택 비율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선택 빈도	12	75	48	5	140
연령대 중 %	36.3%	32.2%	23.4%	22.7%	28.3%
비선택 빈도	21	158	157	17	353
연령대 중 %	63.7%	67.8%	76.6%	77.3%	71.7%
전체 사례	33	233	205	22	493

학교전담경찰관 연령대별로 중재활동 노하우 부족을 어려움으로 든 경우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별로 20대는 36.3%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편, 50대는 22.7%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중재활동 과정에서 노하우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어려움, 상담활동의 어려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성격은 학교 내 협력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요인이라기보다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업무량, 중재활동 업무의 전문성 등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학교주변 순찰활동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임무에서 학교 주변 순찰활동은 선택적 활동사항이다. 지난 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여된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유형에서 순찰활동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상에 학교내외 순찰활동이 주요 임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내 외부로 순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순찰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에 순찰활동이 의무화되지 않은 것은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순찰활동을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순찰활동 시행 여부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표 46> 학교주변 순찰활동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렇다	395	75.7
아니다	127	24.3
합계	522	100.0

<표 46>은 조사대상자에게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75.7%가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지역별 학교주변 순찰활동 여부 비율

	그렇다		아니다		전체	
	빈도	근무지역 중 %	빈도	근무지역 중 %	빈도	근무지역 중 %
전북	44	100.00	0	0.00	44	100.00
제주	5	100.00	0	0.00	5	100.00
서울	83	93.30	6	6.70	89	100.00
광주	19	90.50	2	9.50	21	100.00
경기	100	86.20	16	13.80	116	100.00
울산	5	83.30	1	16.70	6	100.00
경남	20	83.30	4	16.70	24	100.00
부산	24	80.00	6	20.00	30	100.00
전남	13	68.40	6	31.60	19	100.00
경북	34	64.20	19	35.80	53	100.00
충남	10	47.60	11	52.40	21	100.00
충북	8	47.10	9	52.90	17	100.00
대구	8	42.10	11	57.90	19	100.00
인천	8	40.00	12	60.00	20	100.00
강원	8	38.10	13	61.90	21	100.00
대전	3	25.00	9	75.00	12	100.00
전체	392	75.80	125	24.20	517	100.00

〈표 47〉은 지역별로 학교주변 순찰활동 여부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별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적은 지역들로서 서울, 제주, 부산, 울산, 경기지역에서 순찰활동이 활발하고 충북, 충남, 경남, 강원 등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찰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순찰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8> 담당학교 전부 대상 순찰 활동 여부

	빈도	퍼센트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177	44.8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218	55.2
합계	395	100.0

<표 49> 일부 학교 순찰대상 제외 이유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해당 학교측이 원하지 않아서	48	20.2	21.3
순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26	52.9	56.0
굳이 순찰할 필요가 없는 비우범지역이어서	64	26.9	28.4
합계	238	100.0	105.8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담당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44.8%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55.2%는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었다. <표 49>는 일부학교를 순찰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일부 학교를 순찰대상에서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순찰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이고 그 다음은 ‘굳이 순찰할 필요가 없는 비우범지역이어서’, ‘해당 학교측이 원하지 않아서’ 순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지역에서 순찰활동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과된 업무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0〉 순찰활동 시행, 순찰방법, 대상지역 선정시 학교와 협의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렇다	272	69.7
아니다	118	30.3
합계	390	100.0

〈표 50〉은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순찰활동 시행 여부, 순찰방법, 순찰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학교측과의 협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69.7%는 협의하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었고, 30.3%는 그렇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매뉴얼에는 학교 내·외부를 순찰할 수 있되, 학교 건물 내(복도, 화장실 등) 순찰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건물 내부 순찰활동을 하는 데 대한 학교측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학교측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 순찰 대상 학교수, 순찰횟수, 소요시간

	사례수	평균
담당학교 중 순찰대상 학교수(단위: 개)	398	10.77
1개월간 1개 학교 순찰횟수(단위: 회)	397	8.06
1개 학교 순찰 소요시간(단위: 분)	396	43.01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지역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순찰대상 학교수는 평균 10.8개교이다. 이 조사에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학교수가 18개교인 것을 고려하면,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 중 과반수 이상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은 1

개월 동안 순찰대상 1개 학교를 평균 8회 정도 순찰하고 있고 1개 학교를 순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3분 정도로 나타났다.

<표 52> 학교주변 순찰장소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교실 복도	114	12.0	28.9
학교내 시설물	122	12.8	30.9
운동장	124	13.0	31.4
학교밖 우범지역	321	33.7	81.3
학교밖 등하교길	272	28.5	68.9
합계	953	100.0	241.3

<표 52>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순찰장소를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순찰활동은 주로 학교 밖 우범지역과 등하교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약 30% 가량은 교실복도, 학교내 시설물, 운동장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에서는 학교 건물 내부 순찰활동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 53〉 6개월전 대비 학교로부터 순찰활동 요청 빈도 비교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 증가했다	40	10.6	10.6
조금 증가했다	145	38.5	49.1
비슷하다	171	45.4	94.4
다소 감소했다	19	5.0	99.5
크게 감소했다	2	.5	100.0
합계	377	100.0	

〈표 53〉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학교로부터의 순찰활동 요청빈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38.5%가 ‘조금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해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49.1%를 차지한 반면, 다소 혹은 크게 감소했다는 응답은 5.5%를 차지했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5.4%를 차지했다.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대다수는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학교로부터 학교주변 순찰활동 요청빈도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학교로부터의 실제 학교주변 순찰활동 요청 빈도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주변 순찰활동은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4>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21	32.0	32.0
대체로 긍정적이다	199	52.6	84.7
그저 그렇다	55	14.6	99.2
다소 부정적이다	3	.8	100.0
합계	378	100.0	

<표 55>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중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09	28.2	28.2
대체로 긍정적이다	223	57.8	86.0
그저 그렇다	49	12.7	98.7
다소 부정적이다	5	1.3	100.0
합계	386	100.0	

<표 56>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97	25.8	25.8
대체로 긍정적이다	196	52.1	77.9
그저 그렇다	76	20.2	98.1
다소 부정적이다	7	1.9	100.0
합계	376	100.0	

<표 54-56>은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주변 순찰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대다수는 학교주변 순찰활동에 대한 각 학교급별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주변 순찰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32.0%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52.6%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28.2%, 57.8%를 나타내고,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25.8%, 52.1%를 나타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과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84.7%, 중학교 86.0%, 고등학교 77.9%에 이른다. 학교급별 반응을 비교해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중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7>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학교장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20	30.5	30.5
대체로 긍정적이다	211	53.7	84.2
그저 그렇다	58	14.8	99.0
다소 부정적이다	4	1.0	100.0
합계	393	100.0	

〈표 58〉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17	29.8	29.8
대체로 긍정적이다	205	52.2	81.9
그저 그렇다	66	16.8	98.7
다소 부정적이다	5	1.3	100.0
합계	393	100.0	

〈표 59〉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긍정적이다	108	27.9	27.9
대체로 긍정적이다	195	50.4	78.3
그저 그렇다	77	19.9	98.2
다소 부정적이다	7	1.8	100.0
합계	387	100.0	

〈표 57-59〉는 학교전담경찰관 자신의 학교주변 순찰활동에 대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학교장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30.5%,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3.7%를 나타내고 있어서 모두 84.2%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반교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반응이 각각 29.8%, 52.2%로서 이 두 응답이 81.9%를 차지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각각 27.9%, 50.4%로서, 이 두 응답이 78.3%를 차지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신의 학교주변 순찰활동에 대해서 학교 주체별 반응은 학교장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반교사,

학생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60> 학교주변 순찰활동의 어려움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측의 비협조	46	8.6	12.5
순찰차량의 부족	141	26.5	38.3
대상학교의 과다	156	29.3	42.4
전담경찰관 업무의 과다	190	35.6	51.6
합계	533	100.0	144.8

<표 60>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학교주변 순찰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업무의 과다’(51.6%)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상학교의 과다’와 ‘순찰차량의 부족’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각각 42.4%, 38.3%가 이 두 항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반면에 학교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12.5%에 불과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다른 임무에 대한 어려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주변 순찰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은 ‘학교측의 비협조’와 같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라, ‘업무의 과다’, ‘순찰차량의 부족’ 등과 같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2.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역 전문상담기관 연계활동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관련부처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학교폭력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에서 경찰의 주 연계대상은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의 전문상담기관이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는 학교와의 연계활동에 맞춰져 있지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사례의 처리 과정에서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간의 연계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하는 한 형태는 지역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가·피해학생 선도프로그램이나 청소년전문상담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표 61> 전문 청소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291	55.9
없다	230	44.1
합계	521	100.0

<표 61>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5.9%가 청소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2〉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기간별 전문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6개월 미만	64	37.4	107	62.6	171	100.0
6개월~1년	90	56.6	69	43.4	159	100.0
1년~2년	114	72.2	44	27.8	158	100.0
2년 이상	21	75.0	7	25.0	28	100.0
전체	289	56.0	227	44.0	516	100.0

〈표 62〉는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기간별로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학교경찰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가 조성된 후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율이 현재로서는 55.9% 정도이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정착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무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63〉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참여 대상 기관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Wee센터	154	44.3	5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2	49.4	59.7
기타	22	6.3	7.6
합계	348	100.0	120.8

<표 63>은 조사대상자가 학교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대상기관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중심센터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7%이고 지역교육청 산하의 Wee센터와 연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5%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에서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실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상담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4> 학교폭력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참여시 활동내용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폭력예방교육	161	24.4	47.5
범죄 예방교육	67	42.6	83.0
학교폭력 관련 상담	116	33.1	64.5
합계	344	100.0	195.1

<표 64>는 조사대상자가 지역사회 청소년상담기관과 공동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전문상담기관과 공동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활동내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예방교육 활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순이다.

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연계 및 피연계

<표 65> 청소년 상담기관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 연계 요청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312	64.5
없다	172	35.5
합계	484	100.0

<표 66>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기간별 가·피해학생 연계 요청 경험

	있다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6개월 미만	76	50.0	76	50.0	152	100.0
6개월~1년	96	65.3	51	34.7	147	100.0
1년~2년	118	77.1	35	22.9	153	100.0
2년 이상	22	81.5	5	18.5	27	100.0
전체	312	65.1	167	34.9	479	100.0

조사대상자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연계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4.5%가 연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66>은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기간별로 지역사회 청소년전문상담기관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연계 요청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것인데, 지역사회 청소년전문상담기관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경험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연계요청 경험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무경력이 늘어날수록, 환언하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학교전담경찰관과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과의 가·피해학생 연계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67> 청소년 상담기관 연계 요청시 지원 기대사항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220	57.1	70.1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106	27.5	33.8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30	7.8	9.6
연계후 추수관리	29	7.5	9.2
합계	385	100.0	122.6

<표 67>은 조사대상자가 청소년상담기관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연계시 요청한 지원 사항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기대한다는 개별 응답이 70.1%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상담기관에 가·피해학생 연계를 요청할 때, 대부분은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청소년 상담기관으로부터 피연계 요청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197	41.0
없다	283	59.0
합계	480	100.0

〈표 69〉 청소년상담기관으로 피연계시 요청받은 지원활동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22	9.4	11.5
학교폭력 사안조사	55	23.6	28.6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111	47.6	57.8
지역내 학교폭력회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45	19.3	23.4
계	233	100.0	121.4

조사대상자가 지역사회 청소년상담기관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 연계요청을 받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연계 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1% 정도로 나타났다. 〈표 69〉는 청소년상담기관으로 피연계시 요청받은 지원활동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연계 요청을 받는 지원활동은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지역 내 학교폭력 회의’ 순이다.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요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지역사회 상담기관간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0>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활동 어려움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대상기관의 비협조	60	10.1	16.3
대상기관의 업무 과다	44	7.4	11.9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과다	162	27.3	43.9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97	16.3	26.3
내부 지침의 부재	55	9.3	14.9
지역내 연계할 기관의 부재	75	12.6	20.3
기관간 역할의 불분명	101	17.0	27.4
합계	594	100.0	161.0

<표 70>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전담경찰관 담당 업무의 과다’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간 역할의 불분명’,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지역내 연계할 기관의 부재’ 순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지역사회 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가 과중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기타 활동상의 어려움을 분석하면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 장애요인은 대상기관간의 관계적 요인보다는 조직 내부적 요인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사대상자의 20% 가량이 지역내 연계할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표 71〉 근무지역별 지역내 연계기관 부재 선택 비율

	선택 빈도	%	비선택 빈도	%	전체 빈도	%
제주	2	66.7	1	33.3	3	100.0
부산	10	47.6	11	52.4	21	100.0
충북	5	33.3	10	66.7	15	100.0
경남	6	31.6	13	68.4	19	100.0
울산	1	25.0	3	75.0	4	100.0
경기	17	21.8	61	78.2	78	100.0
강원	3	20.0	12	80.0	15	100.0
전남	3	20.0	12	80.0	15	100.0
서울	9	16.4	46	83.6	55	100.0
대구	2	15.4	11	84.6	13	100.0
경북	5	13.5	32	86.5	37	100.0
광주	2	13.3	13	86.7	15	100.0
전북	5	11.9	37	88.1	42	100.0
충남	2	11.1	16	88.9	18	100.0
대전	1	9.1	10	90.9	11	100.0
인천	1	6.7	14	93.3	15	100.0
전체	74	19.7	302	80.3	376	100.0

〈표 71〉은 위 설문문항에서 지역내 연계대상 부재를 선택한 경우를 학교전담경찰관 근무지역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해당 지역내 연계대상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제주, 부산, 충북, 경남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학교전담경찰관의 연계활동 장애요인

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 과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범죄예방교육 활동,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가·피해학생 선도활동을 포함한 상담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학교주변 순찰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이 연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상담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교측의 비협조’나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 등 학교 내의 여러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담당업무의 과다’, ‘대상학교수의 과다’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스스로 담당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 상담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중재활동, 순찰활동 외에도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사안조사, 학교내 폭력서클 관리, 경찰서 자체 가·피해학생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과된 업무량은 과중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의 과다가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활동, 순찰활동의 빈도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전담경찰관 근무지역별로 상담활동 빈

도를 비교한 바, 지역별 평균 상담횟수의 순위는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 순위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담당학교수가 적었던 지역들에서는 1인당 평균 상담활동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지역별로 1인당 평균 담당학교수가 많았던 지역들에서는 지역별 평균 상담횟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담활동 빈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순찰활동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지역별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적은 지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찰활동이 활발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찰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순찰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의 과다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과중한 업무 부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한편, 상담활동과 순찰활동의 빈도와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상담 및 중재 활동 전문성의 한계

학교전담경찰관이 상담활동과 중재활동 영역에서 지목한 장애요인으로서는 ‘담당업무의 과다’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 ‘중재활동 관련 노하우 부족’이다. 이 두 항목은 모두 상담 및 중재활동상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활동영역과 다른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할 영역 사이의 경계설정이 명확하지 못한 데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상담활동과 중재활동에는 비교적 단

순하여 비전문가인 학교전담경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전문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다. 상담활동의 경우에 진로상담,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 상담,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상담 등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담영역이 있는 한편,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전문 심리상담 영역이 있다. 중재활동의 경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등의 영역이 있는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학생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조정 등 전문적인 중재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이 있다. 즉, 상담 및 중재활동 영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할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은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문성 부족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일부(10%)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교전담경찰관 가운데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있지만, 심리상담 영역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는 비전문적 영역이고 전문적 상담기관에 위임해야 할 영역이다. 최근 개정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에서는 심리상담 대상자는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상담 및 중재활동 영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담활동의 경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하는 상담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의 필요와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중재활동의 경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활동을 감당하고 기타 조정 및 중재활동은 전문 중재기관으로 연계한다고 할지

라도, 가·피해학생 부모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활동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그들이 참여하는 몇 가지 활동영역 가운데 특별히 상담활동에서 더욱 어려움을 피력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학교경찰관들도 교육, 상담, 순찰 활동을 주 임무로 삼고 있는데, 미국의 한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학교경찰관(SROs)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활동은 멘토링을 포함한 상담활동으로 조사되었다.¹⁶⁾ 멘토링을 포함한 상담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는 비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 비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소 성급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와 경찰의 연계 협력체계는 대체로 원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조사결과와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연계활동은 아직 몇 가지 장애요인을 안고 있어서 그 연계활동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는 연계대상 기관의 부족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에게 학교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상담기관을 선택하게 한 결과, 그 대다수는 지역

16) Aaron Kupchik and Nicole L. Bracy,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Monahan Torin, Torres R.D.(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 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p.24.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중심센터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교육청 산하의 Wee센터를 들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에서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성남 Wee센터 책임자를 상대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Wee 센터의 경우 학교로부터 의뢰되는 학교폭력 상담사례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과부하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최근 학교폭력 상담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CYS-Net 상의 센터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Wee 센터보다 더욱 풍부한 상담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지원과 생활지원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경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연계활동은 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접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상담활동 과정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지역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고자 하여도 연계할 대상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두 번째 장애요인은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의 비활성화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기관간 역할의 불분명’,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두 응답은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은 두 주체들간의 연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학교와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지역 전문상담기관들 역시 117 학교폭력

17) 2013년 7월에 실시한 경기도 성남 Wee센터 책임자와의 면담조사결과임.

신고센터를 통한 연계 외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이러한 상호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부족은 두 주체들간의 상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막고 상호 연계절차와 방법의 공유를 저해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라.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여건 미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내 학교폭력 관련 활동을 하면서 각 영역별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담당업무의 과다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업무 과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에 전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표 72>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여부 (단위: %)

	빈도	퍼센트
그렇다	166	31.6
아니다	359	68.4
합계	525	100.0

18) 2013년 7월에 실시한 경기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책임자와의 면담에서 나타난 결과임.

〈표 73〉 학교폭력 업무 외 병행 업무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행정 업무	224	32.0	62.7
각종 행사동원	232	33.1	65.0
수사업무	245	35.0	68.6
합계	701	100.0	196.4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에 전종하는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31.6% 수준이다. 나머지 조사대상자의 68.4%는 학교폭력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73〉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 외에 수행하는 병행 업무를 다중 선택한 결과인데, 행정업무, 각종 행사동원, 수사업무 각각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수가 학교폭력 업무 외에도 수사업무,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각종 행사에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 74〉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의견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5	39.4	39.4
전종이 바람직하다	217	41.7	81.2
굳이 전종하지 않아도 된다	76	14.6	95.8
전종은 필요하지 않다	22	4.2	100.0
합계	520	100.0	

학교폭력 업무 전종에 대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수(81.2%)는 학교폭력 업무 전종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전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굳이 학교폭력 업무를 전종하지 않아도 된다고거나 필요

하지 않다는 응답은 18.8%에 불과하다. 학교폭력 업무 전종 필요성에 긍정하는 다수의 의견은 학교폭력 관련 활동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담당업무의 과다를 지적하는 의견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제4장 학교전담경찰관의 연계활동 개선대책

1.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충원

현재 전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인원은 모두 681명이다. 지난 해까지 514명이 활동하고 있다가 올해 증원된 인력이 167명인데, 모두 경찰 정보부서 및 기동대 인력을 감축하여 확보한 인원이다. 그나마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확보된 정원은 193명뿐이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1,138명을 확보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교 담당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담당 업무량의 과다인데, 담당업무량 과다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1인당 담당학교수의 과다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경찰 연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 인력 증원의 방식은 올해처럼 타부서 인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정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에 따른 인력증원이 아니면,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환 경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계획한 바대로 2014년까지 총 인력 1,138명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

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많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교를 담당하는 체제는 고위험군 학교와 저위험군 학교를 구분하여 1인당 담당학교수를 유동적으로 운용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단기적인 목표치이다. 2014년 목표치인 1인 10개교 담당체제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충분한 상담활동과 순찰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가 단지 학교 내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부모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배움터지킴이 공조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시에는 정규경찰관 외에도 학교안전요원이 학교경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교안전요원은 시공무원 신분으로서 정규경찰관과 계급장과 복장, 차량 등에서 구별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규경찰관과 함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규경찰관과 학교안전요원으로 구성된 학교경찰관의 조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배움터지킴이의 조합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배움터지킴이의 인적 구성은 초기에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퇴직경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퇴직교원을 중심으로 그 인적 구성상의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연계는 인력과 자원의 중복배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는 학교주변 순찰활동 외에도 학생들과의 상담, 멘토링 활동도 포함하고 있어서 학교전담경찰관

의 업무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배움터지킴이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상호 업무 조정을 통해서 서로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적정인력 충원이 이뤄지기까지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주변 순찰활동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순찰활동과 관련하여 담당학교의 배움터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순찰활동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보다는 교육부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고위험군 학교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순환 상주 제도 도입

학교 폭력의 실태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한 지역이 있고 더욱 심각한 시기가 있다. 변화하는 학교폭력 실태에 따라 지역별로 시기별로 그 대응책도 다르기 마련이다.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나 캐나다 토론토 지역과 같이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강화된 학교경찰관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형태는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많은 수의 학교경찰관을 배치하거나, 별도의 학교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학교에 더욱 장시간 머물면서 학교경찰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한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학교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해 있으면서 학교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별히 학교폭력이 심각한 고위험군 지역에 대해

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증원과 해당 학교의 협조 요청을 전제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고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의 한계로 학교전담경찰관이 1개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1-2개월 단위로 해당학교를 순환하며 상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로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선도·보호활동’의 핵심은 상담활동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활동은 단순한 진로상담,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 상담,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상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학교전담경찰관의 10% 정도는 심리상담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중에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8.1%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는 일반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임의적인 심리상담 활동이 상담활동과 관련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활동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은 지역 전문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위임(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사례가 폭증하고 상담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학교안팎에서 지원 가능한 상담활동 인적자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일선 현장에서의 요구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일부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전담경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상담 영역(진로상담, 학교폭력 형사절차 관련 법률상담,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상담)과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심리상담)의 명확한 구분은 이뤄져야 하고, 전문적 심리상담 영역은 지역 전문상담기관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 전문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위임(연계)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의식은 덜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에는 심리상담 대상자는 Wee센터나 CYS-Net으로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샵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교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학교전담경찰관 연계활동 업무 매뉴얼화

학교전담경찰관과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제기되는 주요 장애요인은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의 미비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서 ‘기관간 역할의 불분명’과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연계 대상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절차를 간단하게 할 것에 대한 요구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관련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매뉴얼도 대폭 개선하였지만,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을 의뢰 할 대상기관들과 경찰의 상호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특별히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경

력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동 경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연계활동 노하우가 업무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되기보다는 근무경력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상담활동과 관련해서는 심리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상기관들의 종류, 해당 기관의 성격과 역할, 연계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샵 등을 통해 대표적인 연계대상기관인 지역교육청 산하 Wee센터나 여가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모범적인 연계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연계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6. 상담 및 중재활동 관련 전문 교육과정 제공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는 범죄 예방교육, 상담, 학폭위 참석 중재활동 등이다.¹⁹⁾ 이러한 임무는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경찰관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교육자, 상담자, 중재자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의 경우에는 법 집행자의 역할 외에 교육자, 상담자, 멘토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 영국 등의 학교경찰관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 더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경찰관을 학교경찰관으로 선발할 때, 관련 분야 전공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는 한편, 선발 이후에는 재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서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선발 과정에서도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자, 상담

19) 지난 2013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는 ‘교내의 폭력서를 관리’가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로 추가되었다.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선발된 학교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 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학교경찰관에게 부여된 역할 외에도 가해 피해자간의 중재자 역할도 부여받고 있어서 재교육 및 훈련과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에는 범죄예방교육 외에도 소년법체계, 강의기법, 수업관리, 대인관계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고, 범죄예방교육 중에서도 자살, 폭력조직 가입 억제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자살방지, 폭력 조직 가입 억제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해야 할 범죄예방교육 내용이다.²⁰⁾

상담자 역할과 관련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가 확인해 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91.2%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상담활동과 관련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대다수가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관련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담활동의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서 학교폭력 상담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이 요구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재활동을 벌이는 것은 미국 영국의 학교경찰관의 역할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역할인데, 중재자의 역할은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역할이기도 하다.²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복적 사법’의 정신을

20) 자살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사회병리현상이 되고 있고, 교내외 폭력 조직의 존재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21)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인 범죄예방교육, 상담, 학폭위 참석 중재활동에 대한 학교장, 교사, 학생들의 반응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활동은 학폭위 참석 중재활동이다.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회복적 사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쟁 조정자(중재자)의 역할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하여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중재활동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7.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실현 및 수사업무 병행 지양

학교전담경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의 과다함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 환경의 미비에서 비롯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외에 수사업무나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환경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대응활동의 질적 수준을 떨어트리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1.2%는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전종이 바람직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에 전종하지 못하는 환경은 수사업무, 행정업무 병행으로 나타나는데, 수사업무 병행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서 예방교육 담당자이자, 상담자 혹은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수사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은 상담 대상자인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수사 대상자로서 마주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학교폭력 사실이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갖는 한편, 동일 대상자를 상대로 범죄사실을 수사해야 하는 소년범죄 수사관의 역할을 갖게 됨으로써

역할 충돌(Role conflict)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사업무 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학교폭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회 문제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학교와 경찰이 연계하여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교경찰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의 학교경찰관 제도는 거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681명 가운데 조사에 응한 528명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실태,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범죄예방교육, 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참석 및 중재, 순찰,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활동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범죄예방교육, 상담, 학폭위 참석 및 중재활동뿐만 아니라 순찰활동에서도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벌이는 범죄예방교육활동, 상담활동, 학폭위 참석 중재활동, 순찰활동에 대한 학교장, 일반교사,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응답자의 80~90%가 긍정적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올해 초 서울교육청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와도 비슷하다. 올해 8월에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80.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내 학교폭력

대응활동이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두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한 학교와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은 대체로 원활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주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 상담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및 중재활동, 학교주변 순찰활동,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는 데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응답자들은 모든 활동 영역에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교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더 많아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충분한 학교경찰 활동을 펼치기에는 구조적으로 역부족인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익숙한 경찰관이 상담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상의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을 통해서 1인당 담당학교 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수가 평균 18개교에 이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별로 충분한 학교경찰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교전담경찰관이 각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충분히 접촉하고 학교주변을 순찰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원을 확대하고 개인당 담당학교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은 학교 안에서의 경찰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단체,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liaison) 활동을 포함한다.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교경찰관이 연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러한 학교경찰관의 역할을 통해 학교경찰관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과 범죄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폭력에 대응한 학교와 경찰의 원활한 협력관계는 학교폭력 근절에 매우 중요하다. 근래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단순한 일탈행위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행위이며 더러는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학교와 경찰이 공동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학교와 경찰의 연계 및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학교와 경찰의 연계 및 협력관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더 나아가서 지역 전문상담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 유지웅,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방향”, 4대 사
회악 연구자료집 2, 치안정책연구소, 2013.
- 정현주 외,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연구-CYS-Net·학교·Wee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2012 청소년 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
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 경찰청, 보도자료, 2012.1; 2012.6; 2013.2
-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2012.8.
-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7.
-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3. 5.29, 2013.9.2.
- Briers, A. N.,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2, 2003.
- Brown, Be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 Burke, Sean, The advantage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Law and Order* 49, 2001.
- Girouard, Cathy. School resource officer training program(FS 20010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
-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Monahan Torin, Torres R.D.(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 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책임연구보고서 2013-07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연구**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